

# BJFEZ 민원사무처리지침

# BJFEZ 민원사무처리지침

## I. 주요 민원사무 ▷ 41개 사무 [붙임1]

### ○ 물류 분야 : 1건

-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무

### ○ 공장 분야 : 2건

- 공장설립 승인·등록,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기업지원 사무

### ○ 건축·통신 분야 : 9건

- 건축물 관리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·정비 사무
-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설계도 확인

### ○ 농지·지적 분야 : 5건

- 농지전용, 지적관리,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사무

### ○ 환경·보건 분야 : 8건

- 폐수·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 허가
-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사무
- 의료기관·의약품판매업 등 허가 및 지도·점검 사무

### ○ 개발관리 분야 : 16건

- 개발행위 허가 및 행위제한 허가
- 도시계획시설 관리, 토지 수용 및 보상 사무
- 공원녹지, 산지전용, 공유수면의 점·사용 허가 및 관리 사무

## II. 민원사무 자체처리사항

### 1. 처리기한 단축 [붙임2]

- 대상사무 : 6개 사무
- 부서별 : 토지환경과 3, 건축과 2, 개발1·2과 1
- 사무별 단축기간

(단위 : 일)

민원사무명	법정 처리기간	자체 처리기간	단축	
			단축기간	단축률
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	7~30	5	2~25	30~80%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	14	11	3	20%
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	14	10	4	30%
토지거래계약허가	15	12	3	20%
농지전용허가·협의	10	7	3	30%
산지전용허가·협의	30	20	10	33%

### 2. 복합민원심의회 운영

- 대상사무 : 처리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인 민원사무
- 운영방안
  - 서면심의회 지양, 집합 일괄심의 확대
  - 관련 부서별 신속한 심사 및 처리

### 3. 민원조정위원회 운영

- 근거 :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주요기능
  -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
  -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  -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, 복합민원의 심의
  -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등

○ 위원회 구성(7명)

- 위원장 : 개발본부장
- 위 원 : 내부위원 5명(당연직), 외부위원 2명(위촉직)

구분	직위	비고
내부위원	개발본부장	위원장
	기업지원부장	위원
	기획예산과장	위원(감사부서의 장)
	처리주무부서의 장	위원(처리부서의 장)
	토지환경과장	위원(관계부서의 장)
외부위원	변호사	위원
	변호사	위원

※ 간사 : 토지환경과 선임주무관. 서기 : 민원총괄담당자

#### 4. 민원인 편의제고

- 정부24 및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으로 서류 간소화
- 민원인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강화
  - 부서별 상담창구 마련
  - 민원사무별 상담 및 상담대행자 지정
-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(9개 분야, 20명)

- 붙임 1.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절차 1부.  
 2. 민원사무자체처리 대상사무 1부. 끝.

# 붙임1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절차

부서별	인·허가명	처리절차	관련법령	
계	41건			
전략산업지원과	물류	국제물류주선업 등록	-접수→서류검토→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→신고수리→등록증 교부 ·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	
	기업지원	공장설립완료신고	-접수 → 서류검토 → 관련부서(환경 등) 협의 → 현장 확인 → 공장등록	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
공장설립승인		-접수→서류검토→실무종합심의회 →결과취합 →승인여부결정	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	
건축과	건축	건축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협의 (배수담당, 우수담당, 개발행위담당, 농지전용담당, 문화재담당, 산지전용담당 등) →현장확인→필증 교부→완결	· 건축법 제11조, 제12조, 시행령 제9조, 제10조
		건축신고		· 건축법 제12조, 제14조, 시행령 제9조, 제10조
		사용승인		· 건축법 제22조, 시행령 제17조
		표시변경		· 건축법 제19조 제3항
		가설신고		· 건축법 제20조
	주택	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	-접수 → 서류검토 → 관련부서협의 (도시계획담당, 개발행위담당, 우수담당, 배수담당 등) → 승인서교부 및 승인고시 → 완결	· 주택법 제15조 · 시행령 제27조
		주택건설 사용검사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협의 (도시계획담당, 개발행위담당, 우수담당, 배수담당 등) →현장확인→검사필증교부→완결	· 주택법 제49조 · 시행령 제54조
	정보통신	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	-접수→사용전 검사(현장확인)→필증 교부(건축과)→완결	· 정보통신공사업법 · 전기통신기본법
		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확인	-접수→설계도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→협의의견 통보	· 정보통신공사업법 · 전기통신기본법
	토지환경과	농지	농지전용허가	-접수→현장확인→심사의견 작성→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입통보→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확인→허가→주무부서 통보→사후관리
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			-접수→현장확인→심사의견 작성→허가 →주무부서 통보→사후관리	· 농지법 제36조 ·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
지적		지적측량성과검사	-접수→서류검토→현지검사측량→측량성과도교부→완결	· 공간정보관리법 · 지적업무처리규정 · 지적측량시행규칙
		토지이동	-접수→서류검토→현장확인→토지이동 결의(전산처리)→ 완결	· 공간정보관리법 · 지적업무처리규정
토지정보		토지거래계약허가	-접수→매수인 취득목적·요건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→관련부서 협의→허가	·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·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

부서별		인·허가명	처리절차	관련법령
환경	환경관리	대기배출시설허가 (신고) 폐수배출시설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협의(필요시: <b>건축, 지적, 개발</b> 등)→허가(신고)	·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
	환경지도	폐기물관련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 기관(진해구, 강서구 등) 및 부서( <b>건축, 개발</b> 등) 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종합검토→허가	· 폐기물관리법 제25조
		폐기물관련신고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 기관(진해구, 강서구 등) 및 부서( <b>건축, 개발</b> 등) 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종합검토→신고	· 폐기물관리법 제49조
	가스관리	고압가스 허가(신고)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( <b>건축</b> 등) 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(신고)	·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
		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(신고)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(필요시: <b>건설</b> 등) 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승인(신고)	·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
	보건의료	의료기관(병원) 개설 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 및 시·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</b> →허가	· 의료법 제33조
약국 개설등록	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등록증 교부	· 약사법 제20조	
개발지원과	도시계획	개발행위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( <b>산지, 농지</b> )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·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,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
개발1과	시설	공유수면점사용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, 제8조부터 제15조, 제17조부터 제21조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, 제66조
		하천점사용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하천법
		산지전용허가(협의)	-접수(협의)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협의부서 의견통보→완결	·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제18조, 제20조 내지 제21조의 2
		토석채취허가	-접수(협의)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협의부서 의견통보→완결	· 산지관리법 제25조 내지 31조
		입목벌채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
	도시계획	개발행위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( <b>산지, 농지</b> )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~65조 ·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
행위제한 허가 신청	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 협의→가부결정→완결	·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· 가이드라인(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지침,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)	

부서별		인·허가명	처리절차	관련법령
개발 2 과	시설	공유수면점사용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내지 제10조, 제12조 내지 제14조, 제16조 내지 제19조, 제24조
		하천점사용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 교부→완결	· 하천법
		산지전용허가	-접수(협의)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 가부결정→완결	·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제18조, 제20조 내지 제21조의 2
		토석채취허가	-접수(협의)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 가부결정→완결	· 산지관리법 제25조 내지 31조
		입목벌채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가부 결정	·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
		산림경영계획 (토지거래허가)	-접수(협의)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 가부결정→완결	·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
	도시 계획	개발행위허가	-접수→서류검토→관련부서( <b>산지, 농지</b> )협의→ <b>현장확인</b> →허가증교부 →완결	·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~65조 ·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9~31조 ·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
		행위제한 허가 신청	-접수→서류검토→ <b>현장확인</b> →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 협의→가부결정 →완결	·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· 가이드라인(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지침,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)

**1. 대상사무명 :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****□ 관련법령**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6조 1항

**□ 처리절차**

- 건축관련 허가 신청(발주자→주된 인·허가권자 <건축과(통신)> )
-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적합여부 협의요청  
(주된 인·허가권자 <건축과> →협의권자 <건축과(통신)> )
-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(협의권자)
- 협의의견 통보(협의권자→요청기관의 주된 인·허가권자)

**□ 주민불편사항 및 개선방안**

- 민원인 제시 증명이나 행정정보자료로 민원사무 처리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자료 요구없이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부실설계로 인한 재시공 등의 민원불편이 없도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를 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

**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**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	7~30일 (건축허가 처리일기준)	5일	2~25일	30~80%



## 2. 대상사무명 :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
### □ 관련법령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6조 1항

### □ 처리절차
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류 접수(발주자→사용전검사 담당부서 <건축과(통신)>)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조사(담당부서)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적합시 필증교부(담당부서→발주자)

### □ 주민불편사항 및 개선방안

-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처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되, 민원인 편의 최대한 고려하여 검토·처리
-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사용전검사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사용전검사 신청 시 검사일자 및 시간 사전 공지

### 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	14일	11일	3일	20%

### 3. 대상사무명 :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

#### □ 관련법령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제4항
-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제61조

#### □ 처리절차

- 미등기토지 주소 정정(등록) 신청(민원인 → 토지환경과)
- 신청 자격 확인(토지대장상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)
-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지 조사(호적 및 제적 등본, 판결문 등)
-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(주소등록) 및 처리결과 통지

#### □ 개선방안

- 각종 공부 등 행정전산화 따른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신속·정확한 업무 처리로 재산권 보호

#### 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	14일	10일	4일	30%

## 4. 대상사무명 : 토지거래계약허가

### □ 관련법령
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- 「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」

### □ 처리절차

-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접수(허가신청자→토지환경과)
- 허가기준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
- 이용목적(주거, 임·농업, 사업 등)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
- 허가여부 결정·통보 및 허가증 교부(토지환경과→허가신청자)

### □ 개선방안

-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로 최대 15일이 소요되고 있으나, 민원처리기일을 법정처리기일보다 3일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

### 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토지거래계약허가	15일	12일	3일	20%

## 5. 대상사무명 : 농지전용허가·협의

### □ 관련법령

- 「농지법」 제34조(농지의 전용허가·협의)
- 「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」

### □ 처리절차

- 인·허가, 실시계획 승인 등 신청  
(사업시행자→주된 인·허가권자 <강서구, 진해구, 개발부서 등> )
- 농지전용협의 요청(주된 인·허가권자 <강서구, 진해구, 개발부서 등> → 토지환경과)
- 농지전용협의 심사(토지환경과)
-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입 확인(토지환경과)
- 협의의견 통보(토지환경과→요청기관의 주된 인·허가권자)
- 인·허가, 실시계획 승인(주된 인·허가권자→사업시행자)

### □ 주민불편사항 및 개선방안

- 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등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복합 민원의 경우 처리기한이 비교적 길어 민원인에게는 시간적, 경제적 부담
- 처리 기일을 법정처리기일보다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

### 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농지전용허가·협의 ▷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, 생산녹지	10일	7일	3일	30%

## 6. 대상사무명 : 산지전용허가·협의

### □ 관련법령

-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
- 산지관리법 제14조,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

### □ 처리절차

- 인·허가, 실시계획 승인 등 신청  
(사업시행자→주된 인·허가권자 <건축과, 개발지원과 등>)
- 산지전용허가·협의 요청 : 주된 인·허가권자 → 개발1·2과
- 산지전용허가·협의 심사 : 개발1·2과
- 협의의견 통보 : 개발1·2과→요청기관의 주된 인·허가권자
- 인·허가, 실시계획 승인 : 주된 인·허가권자→사업시행자
- 인·허가, 승인 사항 통보 또는 공람 : 주된 인·허가권자→개발1·2과

### □ 주민불편사항 및 개선방안

- 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등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복합 민원의 경우 처리기한이 비교적 길어 민원인에게는 시간적, 경제적 부담
- 처리기일을 법정 처리기일보다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

### □ 민원사무 자체처리 기준표

민원사무명	법정처리기간	자체처리기간	단축기간	단축률
산지전용허가·협의	30일	20일	10일	33%